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437
----------	------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의자 : 박성준 · 정춘생 · 정혜경
용혜인 · 한창민 의원
(5인)

찬성자 : 186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에 따르고, 동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깡패 조직과 다른 없는 ‘반공청년단’ 출범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기자회견에서 ‘반공청년단’은 “불법적인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고 하였으며,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음.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과거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던 국가폭력 조직이었음. 국회의원 김민전은 이러한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이라고 하는 정치깡패를 무장시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임. 이는 공권력의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집단 결성에 일조를 한 것임. 국회의원 김민전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가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내란을 옹호 및 선전하는 데 확성기 역할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음.

‘반공청년단’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 조직된 테러단체이자 깡패집단으로서 당시 민주당 간부들을 구타 및 치사하여 희생자 56명이나 발생하게 한 악독하고 잔혹한 집단이었음. 또한, ‘반공청년단’의 예하조직으로 둔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한 조직으로서 흰색 헬멧을 쓰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민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시도한 악명을 갖고 있으며, 당시 독재시대를 상징하는 집단이었음. 독재정권과 군부정권 악행의 상징인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단체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앞에 소개한 국회의원 김민전의 행위는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위협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또한, 국회의원 김민전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대부분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

장한 사진을 게시하였음. 국회의원 김민전은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말 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고 쓴 글을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채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퍼나르며 가짜뉴스와 허위왜곡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시켰음. 국회의원 김민전의 허위왜곡 정보 게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해 반중정서를 정략적으로 조장 및 동원함으로서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대중외교를 더욱 악화시킨 것에 더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현격하게 추락시켰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김민전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회의원 김민전은 2025년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은 반공청년단을 기자회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며 ‘반공청년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하였고, 국회의원 김민전의 뒤에는 과거 ‘백골단’의 상징인 하얀색 방탄모를 쓴 ‘반공청년단’ 인원들이 서 있었

음. ‘반공청년단’은 과거 독재정권 및 군부정권의 연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막아선 테러조직이자 깡패집단이었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과거 테러조직이었던 명칭을 사용하는 ‘반공청년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임.

나. 국회의원 김민전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것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한 역사를 가진 ‘반공청년단’을 소개하고 동원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며,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임.

다. ‘반공청년단’의 대표인 김정현은 이 자리에서 ‘백골단’을 ‘반공청년단’의 예하조직으로 소개하였으며 “반공청년단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적법한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였음.

라. 또한, ‘반공청년단’ 대표인 김정현은 “저희 반공청년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위법적인 태도를 서슴없이 드러냈음.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정치깡패 동원 및 무장시켜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한 발언으로서 국가 공권력을 부정하고 유혈사태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김민전이 이들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개한 것은 제2의 내란임.

마. 또한, 국회의원 김민전은 2025년 1월 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출처가 불분명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공유하였음. 국회의원 김민전은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셨습니다. 뉴스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고 쓰여 있었으며, 중국어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함께 있는 게시글을 공유한 것임. 국회의원 김민전은 사진이 찍힌 시점과 장소, 인물 및 국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글을 공유하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음.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해당할 수 있음.

바.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변명하며 중국을 언급하여 중국과 외교적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수습 및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였음. 이로 인해 중국 당국과 언론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조장하여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라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임.

사. ‘반공청년단’은 불법·폭력 단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고, 형법 제114조에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력단체의 구성 및 가입·활동을 유도한 국회의원 김민전은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을 범죄행위로 유인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
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
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국회의원 김민전의 제명을 강력
히 촉구함.